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

■ 기초생활 수급자란

기초생활 수급자란 생활하는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환경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데요,
생활비와 생계비지원을 받을수 있는 분야가 총 4가지 [의료급여/ 생계급여/ 주거급여/ 교육급여]로 나뉩니다.

○ 의료급여 : 생활유지가 힘들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에게 국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.

○ 주거급여 : 저소득층 주거한정을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매 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○ 생계급여 :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매 월 지급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18~64세까지 근로 능력을 정부에서 판단한 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○ 교육급여 : 교육을 받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서 보탬이 되도록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이 중요합니다.

○ 소득인정액 :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이 인정되는 액수는 중위소득 30~50% 이하의 경우입니다.
중위소득 기준은 복지부에서 매 년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

○ 부양가족 :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/ 부양의자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/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
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◆ 소득인정액

1인가구 : 1,757,194

2인가구 : 2,991,980

3인가구 : 3,870,577

4인가구 : 4,749,174

5인가구 : 5,6275771

6인가구 : 6,506,368

7인가구 : 7,389,715

8인가구 & 8인가구 이상 :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/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+재산소득환산액 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.

소득평가액이란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를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얘기합니다.

재산소득환산액이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그리고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

(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)

○ 생계급여 : 중위소득 30%
○ 의료급여 : 중위소득 40%
○ 주거급여 : 중위소득 44%
○ 교육급여 : 중위소득 50%
※ 한 가정에서 1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1개 생계비 지원을 받고 4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4개 모두 다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
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

[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서류 필수]

사회보장 급여 신청서/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/ 수급자소득 및 재산 신고서/ 수급자 금융정보(금융 / 신용 / 보험)제공 동의서/
통장사본/ 부양의무자 소득 & 재산신고서/ 부양의무자 금융정보(금융/ 신용/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/ 지출실태 조사표/
통장 1년분 입출금내역서

[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서류 선택]

임대차 계약서/ 사용대차 확인서

1)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신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 가까운 읍, 면,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
사무소에서 안내해주시는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[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게 되시면 " 기초생활수급자선정"까지 보통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이 됩니다.
소득 및 재산 조사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경우 최대 60일 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!]

2) 인터넷으로 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》복지로 사이트 《

3) 온라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※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29번호로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,
또는 위의 방법과 같이 바로 사무소로 가셔서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.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